

201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GUIDE BOOK

차례



I	자금신청 및 지원절차	1
I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2
III	경영안정자금	3
	1. 지원대상	3
	2. 지원내용	3
	3. 구비서류	5
IV	구조고도와자금	7
	1. 지원대상	7
	2. 지원내용	9
	3. 구비서류	11

I 자금신청 및 지원절차

1 회원가입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에 회원가입

2 기업정보등록

* 사전등록 절차

[마이페이지] 클릭 → [기업정보등록(변경)] 클릭 → 파일업로드 및 정보입력

- ※ 업로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임대차계약서)
각종 우대서류(해당기업만)
- ※ 서류업로드 및 필수정보(업종코드 등)까지 입력을 완료해야만 개시일에 신청버튼 생성

3 온라인 신청

* 자금개시 후 등록가능

메인화면 상단 기업지원의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클릭 →
사업게시판 [자금지원 사업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클릭 →
파일업로드 및 정보입력

- ※업로드 서류 : 자금사용계획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진흥원 양식
제조업이 아닌 경우 업종증빙서류, 기타 자금별 추가서류
- ※입력사항 :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기간, 담보제공방법

4 상담일정확정

온라인 접수승인 후 SMS로 향후 진행사항 통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에서 방문날짜 확인 및 신청서 출력

5 사전대출상담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의 사전상담 (신청서에 상담확인도장 날인)

6 방문상담/심사

상담확인도장이 날인된 신청서를 지참하고 진흥원으로 방문
배정된 시간에 따라 상담 및 안내 진행

7 지원결정/통보

[마이페이지 온라인기업지원신청내역] 에서 통보서 출력
은행 절차에 따라 대출 실행

II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구분	경영안정자금	업종구조고도화자금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내용	은행자금 협조용자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보전금리 1.0% ~ 3.5%)	시설자금의 저리용자 지원 (대출금리 3~3.5%, 재해자금(무이자))	
지원자금	운영자금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벤처창업자금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재해자금
연간규모	7,000억원	700억원	300억원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등	제조업 (벤처창업자금 제외)	지식산업센터설립사업자 재해기업
용자한도	5억원 ~ 30억원 이내	3억원 ~ 10억원 이내	2억원 ~ 200억원 이내
용자기간	2년, 3년, 4년	5년, 8년	5년, 8년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	개시일 ~ 소진시	
대출은행	기업, 신한, 국민, 우리, 농협, 하나, 외환, 씨티, SC, 산업, 전북, 부산 등 12개 은행		

※ 경영안정자금 분기별 지원한도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7,000	2,000	2,000	1,500	1,500
일반기업지원	5,000	1,250	1,250	1,250	1,250
우수기업지원	1,000	500	500	-	-
산업확충지원	1,000	250	250	250	250

- 일반기업지원 : 우수기업 및 산업확충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기업
- 우수기업지원 :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향토기업
- 산업확충지원 : 우리시 전입기업, 중견사다리기업, 신규 산업단지 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III 경영안정자금

1 지원대상

제조업 : 제조업 요건 2가지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

- ①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 개인사업자는 표준이 아닌 일반재무제표확인원으로 제출
- ② 공장등록 (또는 건물용도 확인)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공장/제조소 용도)

비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표기사항만으로는 증빙되지 않으며, 반드시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이 있어야 지원가능

※ 지원업종 및 증빙서류는 뒷장의 [경영안정자금 구비서류] 에서 확인

2 지원내용

지원한도 및 금리 ※ 2014년도 대비 이차보전금리 0.5% 인하

구분	지원한도 및 금리 (이차보전)			
일반지원	지원한도 : 5억원 [1회차-2.0%, 2회차-1.5%, 3회차-1.0%]			
우대지원	지원대상 (기존)	지원대상 (신규)	지원금액/금리	
	여성기업		5억원	3.0%
	장애인기업		5억원	3.5%
	유망중소기업		8억원	2.0%
	고용우수인증기업		8억원	2.0%
	중소기업인대상		10억원	2.0%
	비전기업		10억원	2.0%
	향토기업		20억원	2.0%
	우리시 전입기업		30억원	2.0%
	FTA인증 및 활용사례수상업체		6억원	2.0%
	(사)함께하는 인촌사람들 추천기업		2,000만원	2.0%
		우리시 8대 전략산업	6억원	2.0%
		중견사다리기업	30억원	2.0%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강화5억원 검단15억원	2.0%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5억원	2.0%	

■ **횡수산정 기준**

- 2004년도부터 소급해서 적용, 4회 째부터는 지원불가 (3회차 자금 만기일로부터 5년 이후 재신청 가능)
- 일반기업 한도 5억원은 새로운 회차부터 적용, 중소기업대상 우대한도 10억원은 2015년도 선정분부터 적용
- 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중소기업인대상, 비전기업, 향토기업, 우리시전입기업,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우리시 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은 회차 구분 없이 1회에 한해서 우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은 회차 구분 없이 항시 우대
 - ※ 1회에 한해서 우대지원을 받는 기업은 3회 지원받은 후이라도 1회에 한정하여 지원가능 (단, 유효기간 이내 신청가능)

■ **지원한도는 총매출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수준 : 기업체 자율선택 (고정 및 변동)**

- 업체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 - 인천시 보전금리 (1.0%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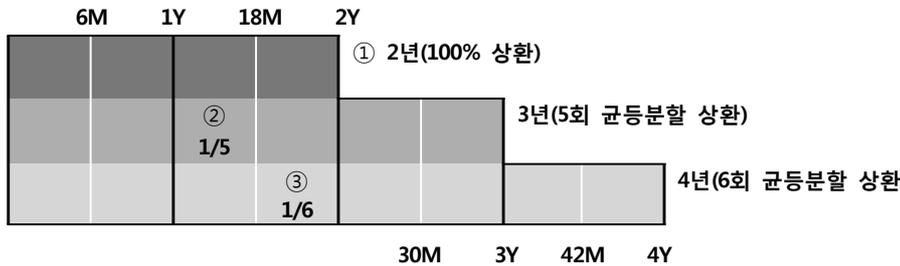
■ **재신청 가능시기 : 대출기간 만료 시, 조기상환 인정 (금융거래 확인서 제출)**

상환방법

구분	2년	3년	4년
내용	2년 만기 일시상환	6개월 거치 5회 균등분할 상환	1년 거치 6회 균등분할 상환

※ 연장지원 없음

『대출상환방법 예시』



- ① 대출기간 2년 선택 업체 : 만기 시 원금 100% 상환
- ② 대출기간 3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이 되는 시점부터 1/5씩 원금 상환(총 5회 납입)
- ③ 대출기간 4년 선택 업체 : 대출 후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6씩 원금 상환(총 6회 납입)

지원제외

- 시 또는 구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단,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비전·향토·유망·중소기업인대상 수상 기업 제외)
- 휴·폐업 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에 한함)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세금 체납중인 기업

공통 및 업종증빙서류

제출서류		비고	
기업명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별도첨부 없이 온라인에서 작성 * 계획서 및 동의서는 접수 사이트 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소정양식)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증명원 1부 ※ 제조업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일반재무제표증명원만 가능(표준재무제표 불가)		
	사업자등록증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기업명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원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용도-공장, 제조업소/소유주 표기)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공장일 경우)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업체는 반드시 필요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원이 없는 업체만 해당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등록증 1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택시운송사업 등록증 1부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 1부	
	측량업	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 1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부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무역업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 각 1부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입주확인서 1부 (정부·인천광역시가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제물포스마트타운 창업보육실)	
	FTA 인증 수출업체	FTA 인증수출자 선정서 1부 (관세청 발급)	
	FTA 활용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 선정서 1부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업체	(사)함께하는인천사람들 추천서 1부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	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 1부 (업종범위는 [붙임] 참고) * 사업자등록증 기재내용은 업종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우대기업 증빙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고용우수인증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1부 (중앙 및 인천시 선정)	선정문의 ☎ 440-4233
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78
시지정 우수기업	인천시지정 비전 또는 향토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2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1666-9988
여성기업인	여성기업인확인서 1부 (www.smpp.go.kr 발급)	발급문의 ☎ 260-3602
FTA 인증 수출기업	관세청 인증수출자 선정서 사본 1부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기업	인천시선정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사본 1부	
중견사다리기업	인천시지정 중견사다리기업 선정서 1부	선정문의 ☎ 440-4252
우리시 전입기업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이전 날짜 표기) 개인 : 사실증명원 1부 (세무서 발급)	사유발생 1년 이내
우리시 8대 전략산업	전략산업 확인서 (업체작성, 매출증빙서류 별첨)	*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규산업단지입주기업	입주계약서 (1년 이내 입주확인서 제출) 관리기관 발급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입주전/ 사유발생 1년 이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확인서 이전일자 확인서류(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발급 사실증명)	사유발생 1년 이내

업종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운송업	501
화물 취급업	5294
창고업	5210
화물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1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52992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6939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범위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텔레마케팅업	75991
전시 및 행사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기계구입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 등을 구입

공장확보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한 공장구입 및 신축, 공장증설을 위한 증축 등
 - (신축)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기업
 - (증축) 자가공장을 증설하고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증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제조 시설설치 승인을 득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공장이전대상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제조시설면적 500㎡이상으로 공장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기업

연구소설치자금

- ① 제조업 요건 충족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공장등록)
 - 최근 결산년도 손익계산서에서 [제품매출] / [전체매출] 비율이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공장/제조소 용도)
- ②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신축, 건물구입, 건물 증·개축 등
 - (신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벤처창업자금

- ① 창업 7년 이내
- ② 벤처기업(예비벤처 포함)이거나 이노비즈기업,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기업

※ 두 가지 요건이 서류상 충족되면 신청가능, 추후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평가 의뢰 후 평가되는 보증금액만큼 벤처창업자금으로 추천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2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과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자

재해자금

- ①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 업종
 - ②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적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
-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지원한도 및 금리

구분	지 원 사 업		용자 한도	용자기간	대출 금리
업종 (700 억원)	구조 고도 화 자 금	자동화 연계은행자금 (최대2억원)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0% (변동)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소기업 육성 연계은행자금 (최대1억원)	4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 시설 자금	공장확보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업부설연구소설치	1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벤처창업자금 (30억원)	벤처창업자금 (30억원) 은행자금 (최대3억원)	7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2.5% (고정)	
			5년 (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산업 (300 억원)	산 업 반 성 조	지식산업센터건설 (200억원)	200억원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3% (변동)
		재해기업 (100억원)	2억원	5년 (2년거치 3년 분기별 분할상환)	0%

※ 업종구조고도화자금은 7/1부터 기존금리에서 0.5%p 인하됨

지원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미등록 공장 (벤처창업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제외)
 -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의 소기업은 적법한 건축물(용도:공장, 제조소)일 경우 가능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휴.폐업 중인 기업
-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고시(제2011-14호)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
- 시 또는 구조고도화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중인 기업
 - ※ 시 구조고도화자금 지원결정잔액(또는 업체별 지원한도)이 남아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 업력 5년이상 기업중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시설자금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산정기준

[공 통]

- 신청일 현재 업종구조고도화자금(구,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 지원 총액(대출잔액기준)이 지원한도액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은 제외
- 백만원 미만의 금액은 지원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최저 지원금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함
- 기 지급된 금액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해당금액만큼 감액하여 추천함
- 신청금액이 시설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구입가격을 적용함
- 연계운전자금은 시설자금의 50%범위내에서 제조시설면적에 따라 최대2억원(자동화사업) 또는 최대1억원(소기업육성) 범위내에서 지원
- 금형/치공구, 중고기계, 구입완료시설은 지원에서 제외함
- 외산기계는 신청일 현재 고시환율 중 전신환(고객이 살 때)금액으로 계산하여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외산기계의 구입가격은 CIF(도착항 인도가격)이하를 기준으로 함

[공장확보·연구소설치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공장구입자금은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범위내(실거래금액이 작을 경우 실거래가 적용)에서 초과액은 제외하고 추천함
 - ※ 건물분 시가표준액 : 인천시 전자납부시스템 공시내용 확인
- 공장신축자금은 견적서(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벤처창업자금]

- 운전자금만도 3억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평가금액으로 추천금액이 결정됨

[지식산업센터건설자금]

-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건설자금은 도급계약서에 표시된 소요금액을 적용함

[재해자금]

-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최대 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횡수제한, 중복지원, 매출액 상관없이 지원
 - ※ 전체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함

3 구비서류

공통서류

- ① 사업계획서 1부 - 소정양식
- ② 사업자등록증 1부
- ③ 공장등록증 1부 (공장건축면적500㎡미만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제조소) 및 임대차계약서)
※ 벤처창업자금 및 산업구조고도화자금은 제외
- ④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⑤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 소정양식
- ⑥ 세금완납증명서 각 1부 (국세 및 지방세 포함)

자금별 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자동화 및 소기업육성	①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자가공장 확보	① 공장설립승인서 1부 (또는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증설승인 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③ 임차공장증빙서류 각 1부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법인등기부등본) ④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 (해당기업만 첨부)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1부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및 공사계약서(또는 견적서) 각 1부)
벤처창업	① 벤처 및 이노비즈 입증서류 1부 (또는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확인서 1부) ② 구입시설 견적서(계약서) 및 카달로그 각 1부 (시설자금의 경우)
지식산업 센터건설	①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서 1부 (또는 입주계약서 1부) ② 건축허가서 1부 ③ 도급계약서 및 설계도면 각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재해기업	① 재해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소정양식 ② 재해확인서류 1부 ③ 업종증빙서류 1부 (경영안정자금 대상 및 구조고도화 대상 전업종)

문의처

자금상담 : 260-0240/0227/0247, 시스템관련: 070-8787-8286~7

